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목적 및 제출자

- 본 조례안은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 제5조) 풍수해 예방과 관련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 제10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설치 규격,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 ~ 제12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4. 12. 원안가결 함.